



제429회국회(정기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직장 내 괴롭힘 징계〉

■ 한지아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2337호)

2025. 9.

국회 운영 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김상수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한지아 · 우재준 · 안철수 · 서범수 · 이인선 · 김재섭
김기현 · 서명옥 · 조은희 · 이달희 의원(10인)

2. 제 안 일 : 2025. 8. 25.

3. 회 부 일 : 2025. 8. 26.

※ 의안번호 : 12337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현직 국회의원인 장관 후보자가 자신의 보좌직원에게 일반 상식에 현저히 반하는 사적 업무를 지시하고, 지속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을 자행했다는 내용이 언론 보도로 제기된 바 있음. 보좌직원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의정활동의 전반을 지원하는 핵심적 주체이자 소중한 동료임. 하지만 위 사례에서 드러나듯 국회의원인 보좌직원을 대상으로 본인의 지위 또는 업무 관계의 우위를 남용하여 부당한 지시를 하거나 보좌직원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방지할 법적·제도적 장치가 미비한 상황임.

이에 국회의원인 그 지위를 남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서 폭언·모욕, 부당한 지시·명령, 그 밖의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할 경우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그 의결로써 징계할 수 있도록 하고 국회에 직장 내 괴롭힘 고충 상담창구를 설치하며 사무총장이 의원 및 보좌직원을 대상으로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5조의2 신설).

Ⅲ. 검토의견

1.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 신설

개정안은 국회의원의 보좌직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의무를 규정하고,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상담·조사 및 처리 등을 위한 고충상담창구를 신설하며, 국회사무총장은 보좌직원을 대상으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려는 것임.

[표-1]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신설>	제25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등) ① 의원은 「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보좌직원에게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서 폭언·모욕, 부당한 지시·명령, 그 밖에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상담·조사 및 처리 등을 위하여 국회에 직장 내 괴롭힘 고충상담창구를 둔다. ③ 사무총장은 의원 및 「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보좌직원을 대상으로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현행	개정안
	④ 제2항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고충상담창구의 설치와 운영, 제3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

개정안은 국회의원이 본인의 지위를 이용하여 보좌직원에게 부당한 지시를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직장 내 괴롭힘을 방지하고, 보좌직원의 합리적인 근무환경을 보장하려는 것임.

다만, 개정안을 심사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임.

첫째,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의 신설에 대해서는 금지의무를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입법의 효과성, 국회의원의 금지의무를 「국회법」에 구체적으로 열거하는 것이 적정한지 여부, 성폭력·성희롱·스토킹 등에 대한 금지는 「국회법」에서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으로 보임.

둘째, 직장 내 괴롭힘을 전담하는 고충상담창구의 신설은 현재 국회 직원들의 고충상담·조사 및 처리 등을 담당하는 국회인권센터가 있다는 점¹⁾, 의원들에 대한 조사는 징계안 발의 시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조사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필요가 있음.

1) 「국회사무처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 및 처리지침」에서 고충상담창구 운영 및 예방교육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셋째, 개정안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교육을 의무화하고 있는데, 현재 국회에서 실시하는 법정의무교육은 「양성평등기본법」, 「아동복지법」 등 다른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다는 점²⁾을 고려할 때, 이를 절차법적 성격인 국회법에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2) 참고자료1(법정의무교육 실시근거) 참조

2. 국회의원 징계 사유에 직장 내 괴롭힘 추가

개정안은 보좌직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³⁾을 국회의원의 징계 사유에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155조제1호의2 신설).

[표-2]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55조(징계) 국회는 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그 의결로써 징계할 수 있다. 다만, 의원이 제10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아니하고 그 의결로써 징계할 수 있다.	제155조(징계) ----- ----- ----- ----- ----- -----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신설>	1의2. 제25조의2제1항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2. ~ 16. (생략)	2. ~ 16. (현행과 같음)

현행 「국회법」 제155조는 ① 헌법상 청렴의무 및 직위남용 금지 의무 위반, ② 국회관계법상 각종 의무 위반, ③ 「공직자윤리법」 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 ④ 「국회의원윤리강령」 또는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 위반을 의원의 징계 사유로 열거하고 있는

3) 개정안 제25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등) ① 의원은 「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보좌직원에게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서 폭언·모욕, 부당한 지시·명령, 그 밖에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데, 의원의 보좌직원⁴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된 징계 사유는 명시적으로 두고 있지 않음.

개정안은 보좌직원⁴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동시에, 이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위반행위를 징계 사유에 명시적으로 추가함으로써 국회의 자율권에 의하여 이를 제재하려는 취지로 보임.

개정안에 대해서는 첫째, 최근 보좌직원⁴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을 징계 사유로 하는 징계안이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 위반을 근거로 발의⁴된 점에 비추어 포괄적·일반적인 의원의 윤리준칙인 「국회의원 윤리강령」 또는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으로도 직장 내 괴롭힘을 제재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둘째, 특정 대상(보좌직원)에 대한 구체적 행위(직장 내 괴롭힘)에 한정된 개정안의 징계 사유가 현행 「국회법」상 다른 징계 사유⁵들과 균형성 측면에서 적절한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안으로 판단됨.

4) 2025. 7. 24. 세금 탈루, 부동산 투기, 갑질 전력, 학문적 부정행위, 이해충돌 의혹을 징계 이유로 하고,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 위반을 징계 사유(근거)로 하는 「국회의원(○○○) 징계안」이 발의되었음.

5) 참고자료2(「국회법 제155조의 징계 사유」 참조)

참고자료1

법정의무교육 실시근거

구분		근거
폭력 예방교육	성희롱 예방교육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국가기관등의 장과 사용자는 성희롱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국가기관등과 사업장 등에 소속된 사람(해당 국가기관등의 장과 사용자를 포함한다)을 대상으로 성희롱 예방교육의 실시, 자체 예방지침의 마련, 성희롱 사건이 발생한 경우 재발방지대책의 수립·시행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국가기관등의 장은 그 조치 결과를 여성가족부장관 및 주무부처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성매매 예방교육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초·중·고등학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은 성에 대한 건전한 가치관 함양과 성매매 방지 및 인권보호를 위하여 성매매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성폭력 예방교육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의 장,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의 장(이하 "국가기관등의 장"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 실시, 기관 내 피해자 보호와 피해 예방을 위한 자체 예방지침 마련, 사건발생 시 재발방지대책 수립·시행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정폭력 예방교육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3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의 장은 가정폭력의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장애인식 개선교육		「장애인복지법」 제25조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초·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 및 공공단체(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은 매년 소속 직원·학생을 대상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이하 "인식개선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아동학대 예방교육		「아동복지법」 제26조의2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의 장은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성인지 교육		「양성평등기본법」 제18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 모든 영역에서 법령, 정책, 관습 및 각종 제도 등이 여성과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인식하는 능력을 증진시키는 교육(이하 "성인지 교육"이라 한다)을전체 소속 공무원 등에게 실시하여야 한다.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교육		「긴급복지지원법」 제7조 긴급복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 등의 장은 소속 긴급복지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징계 사유
① 헌법상 청렴의무 및 직위남용 금지의무 위반 ② 「국회법」상 겸직금지 규정 위반 ③ 「국회법」상 영리업무 종사금지 규정 위반 ④ 「국회법」상 사적 이해관계의 등록·변경등록 의무 위반 ⑤ 「국회법」상 이해충돌 신고 규정 위반 ⑥ 「국회법」상 이해충돌 우려 안건 등 회피의무 위반 ⑦ 「국회법」상 정보위원회 위원의 국가기밀 누설 금지의무 위반 ⑧ 「국회법」상 의제 외 발언 금지의무 위반 ⑨ 「국회법」상 비공개 회의록 열람 등 금지의무 위반 ⑩ 「국회법」상 비공개 회의내용 공표 금지의무 위반 ⑪ 「국회법」상 회의의 질서 유지의무 위반 ⑫ 「국회법」상 모욕 등 발언 금지의무 위반 ⑬ 「국회법」상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 점거 금지의무 위반 ⑭ 「국회법」상 회의장 출입의 방해 금지의무 위반 ⑮ 정당한 이유 없이 국회 집회일부터 7일 이내 또는 출석요구서 받은 후 5일 이내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⑯ 탄핵소추사건 조사 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의의무 위반 ⑰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징계사유 해당 ⑱ 「공직자윤리법」 제22조에 따른 징계사유 해당 ⑲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 ⑳ 「국회의원윤리강령」 또는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 위반

문 의 처

02)6788-5014